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의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10. 6. 전원회의를 열어 공정거래 사건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처리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약칭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여 11. 1. 시행하였다.

공정위는 소관 법률 위반사건의 처리절차를 더욱 투명·공정하게 함과 아울러,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사건절차규칙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 등을 개선, 반영하기 위해 동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첫째, 공정위는 1심법원의 재판절차에 준하면서 피심인에게 방어권행사에 필요한 의견진술기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한편, 조사권이 미흡하여 법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업무혁신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보고서 첨부(증거)자료를 사전에 피심인에게 제공하며, 둘째,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심의와 함께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가 필요하며, 첨부자료의 제공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필연적으로 피심인의 증거항변이 늘고 기일속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심의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다음 기일을 정하여 심의를 속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33조제6항)하고, 셋째,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건처

리 업무의 효율화」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일정 양식에 의한 신고를 제도화하기 위해 위원회가 운영하는 법률의 위반혐의를 신고하는 경우에 일정 양식에 의해 신고하도록 근거를 마련(제10조제2항)하였다.

넷째, 심사보고서와 의결서에 사건담당자 또는 주심위원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대한 성취감과 책임성의 고취를 유도하기 위해 심사보고서에 조사공무원의 이름을 제안이유 부분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원회의가 심결한 의결서의 서명란에 “주심위원”을 표시토록 하였고, 다섯째, 위원회 심판은 1심법원의 사법절차에 준하므로 공정한 대심구조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구조가 필요, 이를 위해 심사판도 피심인이 주장,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 다룰 수 있도록 증거조사 신청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담합사건의 전원회의의 소관기준이 높아 경쟁제한성이 큰 사건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심층 심의가 곤란한데, 담합사건은 경쟁제한효과가 크기 때문에 심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전원회의의 대상요건을 완화하였다. 끝으로 대리인으로 선임되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제도 운영이 형식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대리인 허가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 대비표는 본지 부록(80면 이하) 참조.

소비자주권이 실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소비자보호 종합계획 수립·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분야 각계 전문가 52명과 함께 소비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시장환경이 공급자 주도형 시장에서 수요자 주도형 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 수준이 그 나라 경쟁력 수준을 결정짓는 가능자가 되었으며, 특히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은 소비자후생 극대화라는 동일한 목표달성을 위해 동시에 보완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소비자정책 추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종합계획 수립 작업을 금년 2월부터 추진해 왔으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각 분과별로 업계,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8개 연구분야별¹⁾ 민간전문가 그룹들이 각각 해당 분야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최종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였다.

공정위는 향후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소비자주권이 실현되는 시장환경 조성'과 '자주적 소비자의 역량제고'를 제시, 구체적으로 소비자정보제공지원센터²⁾를 설립하고, 스팸메일 대응책으로 허위 헤드(Head) 정보에 대한 제재³⁾를 강화하며, 효율적 피해구제제도 구축을 위해 온라인 조정제도 확대, 사업자의 자율적인 CCMS(Consumer Complaint Management System)⁴⁾ 도입유도 등을 추진과제로 설

정하는 한편, 종합계획상의 추진과제들을 검토하여 중요도,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에 따라 향후 3년간의 실천계획을 금년 12월 까지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금번 소비자보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추진방식은 과거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과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다. 우선 작업추진 주체가 공개모집방식을 통하여 구성된 자발적인 민간전문가 그룹이라는 점과 온라인상에서의 상호 토론 및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토론 웹사이트를 개설·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위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최소화 하였다는 점에 있는데, 이러한 작업추진방식은 현 정부의 '참여행정', '고객지향행정'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소비자정책수립에는 실수요자의 요구를 널리 수렴하여 반영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1) 8개 세부 연구분야 : ①비전제시 및 종합 ② 행정체계 및 제도개선 ③ 소비자정보제공 ④ 거래행태 ⑤ 전자상거래 ⑥ 특수거래 ⑦ 분쟁조정·피해구제·법집행 ⑧ 국제화.
- 2) 소비자정보제공지원센터는 공공부분에서 생산되는 소비자정보를 재가공·종합하여 일괄적인 소비자정보제공을 담당하고, 교육명령제도 도입시 소비자교육기능을 지원 →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소비자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전달하는 시스템(Consumer gateway)을 구축하여 소비자들이 원스톱(one stop)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 조성(정보탐색 및 검증비용의 최소화).
- 3) 허위 헤드정보 규제는 수신인이 불법 스팸메일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메일제목에 실제 메일본문 내용과는 달리 수신인의 열람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허위 기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의미.
- 4) CCMS 제도는 기업이 소비자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그 활동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주된 내용.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명령지침』 제정 ·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방법으로 ‘교육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명령지침』을 제정하였다.

공정위에서는 범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외에 교육명령을 추진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 효과적으로 준수되도록 할 계획이다.

동 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명령은 방문판매법 위반행위가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향후 범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행되며,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는 임·직원 전원과 소속 판매원 중 일정비율 이상의 판매원을 교육에 참석시켜야 하고, 위반사항과 관련한 법령 내용, 소비자보호제도 등 관련제도 등에 대해 3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방문판매업 및 다단계판매업과 관련한 범위반 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한국직접판매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한국공정경쟁연합회를 그 외의 범위반 사업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일괄구제협의회를 개최하여 해외여행 위약금관련 소비자피해를 일괄구제하기로 하였다.

공정위의 소비자피해 일괄구제제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공정위 소관법률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한 사건 중 소비자의 피해규모가 소액이고 다수인 사건에 대해 피해 처리기관과 협력하여 소비자피해를 일괄하여 구제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선정된 피해 일괄구제 사건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을 위반하여 2004년 10월 2일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21개 여행사가 패키지여행 일정 불참시 위약금 부과 조항을 규정하여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들 여행사의 약관에는 고객이 일정을 원치 않거나 고객의 건강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현지에서의 일정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까지도 추가비용(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행계약의 고객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불리한 것인 동시에 여행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고객)들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공정위,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에게 신청 서식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피해구제의 신청이 끝나면 한국소비자보

호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피해구제의 상대방 사업자와 소비자간 피해구제에 합의토록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피해분쟁 조정을 하게 된다.

2004. 10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공정위는 2004년 10월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2004년 11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4년 10월중 17개 출자총액제한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4. 10. 1. 312개에서 2004. 11. 1. 현재 313개로 1개사가 증가하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34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4. 11. 1. 현재 595개로 전월과 같아, 공정거래법상 5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수는 2004. 10월중 9개사가 신규 편입되고, 8개사가 계열제외 되어 2004. 11. 1. 현재 908개로 전월대비 1개사가 감소하였다.

[2004. 10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4. 10. 1	편 입				제 외						증감	2004. 11. 1.
		회사 설립	주식 취득	기타	계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친족 분리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7개)	312	1	3	-	4	2	-	1	-	-	3	1	313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51개)*	907	3	6	-	9	4	-	2	-	2	8	1	908

* 17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포함



[2004. 10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9개사(지분취득 : 6, 회사설립 : 3)

◆ 제외 : 8개사(합병 : 4, 청산종결 : 2, 기타 : 2)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엘 지	대산열병합발전 (유)*	발전소 및 설비 소유, 관리	지분취득	-	-	-
	(주)엘티에스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지분취득	-	-	-
현 대 자동차	대경화성(주)	자동차부품용 고무제품제조·판매	지분취득	-	-	-
엘 지 전 선	(주)이앤알	제조·서비스업	회사설립	-	-	-
삼 성	에스디플러스(주)	연성회로기판용 원판필름제조	회사설립	-	-	-
롯데	대산열병합발전 (유)*	발전소 및 설비 소유, 관리	지분취득	-	-	-
태 광 산 업	(주)엔아이티	정보통신산업	지분취득	(주)한빛유선방송	중계 및 종합 유선방송업	합병
	(주)북부산방송	종합유선방송업	지분취득	(주)서구유선방송	"	"
	(주)태광리얼코	건물 및 각종시설물 유지	회사설립			
에 스 케 이	-	-	-	부산도시가스 개발(주)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청산종결
금호아 시아나	-	-	-	아시아나지원시 설(주)	항공운송지원 서비스업	합병
두 산	-	-	-	두산기업(주)	골프장 운영업	"
삼 성	-	-	-	엠펜온(주)	소프트웨어 개발	청산종결
씨제이	-	-	-	(주)해포 푸드서비스	농축산물 수출입업	기타
	-	-	-	뉴라이프(주)	신소재 응용제품 개발·판매업	"

* 기업집단 「엘지」, 「롯데」의 계열사인 현대석유화학(주)가 대산열병합발전(유)의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2개 집단의 계열사로 편입함